

영등포구의회
제174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
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

2013. 4. 29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
專 門 委 員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 檢 討 報 告

1. 경 과

의안 제197호로 2013년 4월 18일 김길자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지원대상과 구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, 안 제4조)
- 나.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,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.(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)

다.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, 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

나. 예산조치 : 사업수행시 필요

다. 타 자치구 조례 현황 : 구로구, 경기도, 파주시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1990. 1. 13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한 ‘장애인 고용의무제도’는 계속 확대되어 왔지만,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‘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’ 결과에 따르면 만 15세 이상 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5.5%로 전국 취업자 비율 60.1%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.

- 근로능력이 가능한 장애인들의 고용확대와 직업재활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와 자립기회 제공 등 모두가 함께하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,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과와 일자리추진단의 유기적인 업무체제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됨.

-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,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기회 확대와 직업재활 훈련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관 련 법 령

■ 장애인복지법

- 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·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·장애인,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,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.